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확대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87호)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91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7호)	1
2.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91호)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7호)	1
2.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91호)	2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확대 등 (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3

I. 제안경위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7호)

가.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4.

다. 회 부 일 : 2025. 4. 7.

2.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91호)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5.

다. 회 부 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7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2.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91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II.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확대 등 (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허성무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 사용료의 감면(제34조)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u><후단 신설></u> (제1항)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	○ 사용료의 감면(안 제34조)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u>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 면제기간은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까지로 함.</u> (안 제1항)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	○ 사용료의 감면(안 제34조)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u>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 면제기간은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까지로 함.</u> (안 제1항)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허성무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u>지자체</u>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 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u><신 설></u>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u>지자체</u> (<u>시·도 교육청을 포</u> <u>함한다. 이하 이 조</u> <u>에서 같다</u>)에 사용허 가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u>제1항제2호에 따라 사</u> <u>용료 면제를 받은 지방</u> <u>자치단체는 해당 행정</u> <u>재산의 공익적 활용 성</u> <u>과를 매년 중앙관서의</u> <u>장에게 보고하여야 함.</u> (안 제4항)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¹⁾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면제 받은 경우, 그 면제기간을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정함으로써 사용료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허성무의원안은 사용료 면제 대상을 현행

1)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에 시·도 교육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이 행정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²⁾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행정재산 사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행정재산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한편, 현행법령은 일반재산³⁾의 대부료에 대해서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료와 동일하게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이 확대될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면제 기간도 확대됨.

「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첫째, 국유재산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한 국유재산 활용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됨.

3)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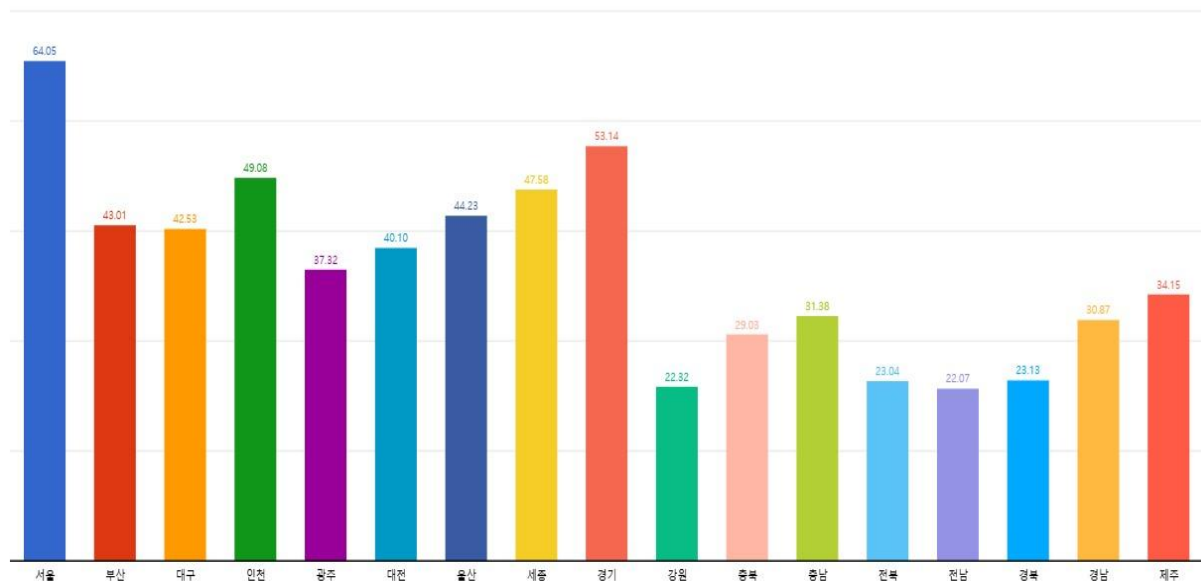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주민의 복리 향상에 사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1년 이상의 국유재산 활용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자립도⁴⁾와 재정자주도⁵⁾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 유인 감소는 더욱 커질 수 있음.

[2023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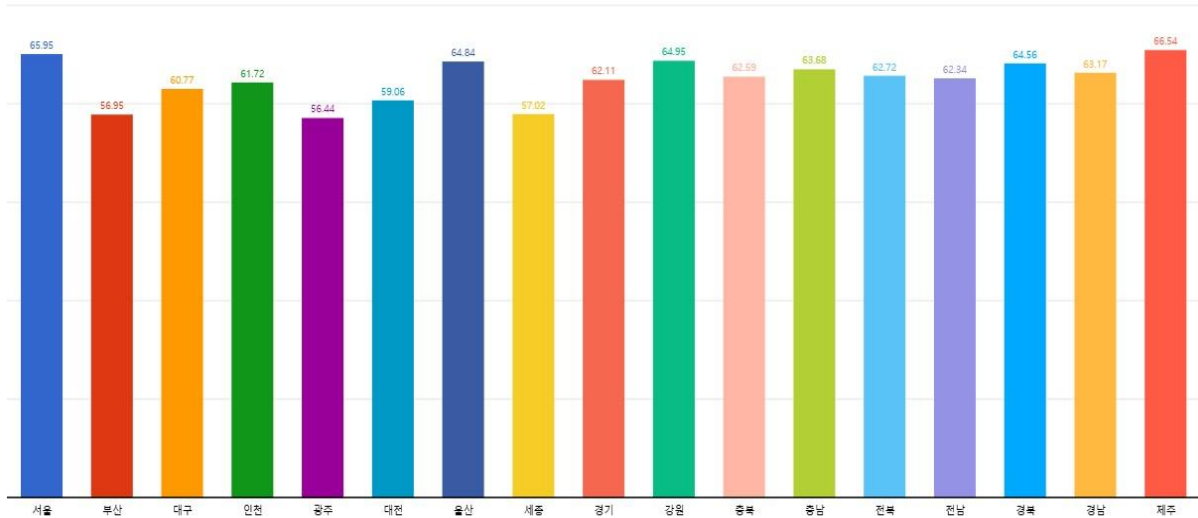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365

4) 산정 공식: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5)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산정 공식: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2023년 시·도별 재정자주도]



자료: 지방재정365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기간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확대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국유재산을 통한 주민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료등의 면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6) 및 제34조제1항제1호7)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는 지자체 재산인 공유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이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국가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면제받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음.

이처럼 국가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조건 없이 사용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등 사용기간 까지 사용료등의 면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⁸⁾.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등의 부과는 국유재산 활용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됨. 아울러 사용료등의 부과는 국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국유재산 활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기획재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가 국가시설 유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라며, 해당 규정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용·공공용 사용기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국유재산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국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무상 사용기간이 확대될 경우 국유재산 유상사용의 원칙이 훼손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의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⁹⁾.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현황(2023년 기준)]

	유 상	무 상	합 계
계약(건)	2,922	56	2,978
재산가액(억원)	11,961.8	1,619.8	13,581.7
사용료(억원)	125.9	-	125.9
면제액(억원)	-	33.36	33.36

자료: 기획재정부

* 공용·공공용 유상사용인 경우 2.5% 적용 / 취득계획을 제출한 경우 1년간 무상사용

[개별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적용 현황(2023년 기준)]

	감경(2.5% 미만)	면제(0%)	합 계
계약(건)	2	302	304
재산가액(억원)	1.7	7.5	9.2
사용료(억원)	0.014	-	0.014
감경·면제액(억원)	0.029	0.14	0.169

자료: 기획재정부

9)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자체는 독립적인 재산 운영 주체로서 각각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무상사용할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임

둘째, 현행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거나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2.5%로 감면하여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29조¹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위탁료를 지급받아 사용료와 상계 처리가 가능함¹¹⁾.

10)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용허가·대부와 달리 수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자인 국가로부터 위탁료를 지급받아 사용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¹²⁾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셋째, 시·도 교육청을 사용료등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사용료 면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를 말함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을 명시¹³⁾하고 있음.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⁴⁾.

이에 비추어 볼 때,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종국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대상으로 지방자치

1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단체만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학예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역시 학교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2022년 국방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한 바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한 시·도 교육청을 사용료 면제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그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허성무의원안 제3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활용 성과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의 공익적 목적 사용의 활용 성과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무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사용을 감독하고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허성무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 이 경우 사용료 면제기 간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되, 제2호에 따라 사 용허가한 경우에는 해 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 용·공공용 또는 비영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 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 이 경우 제2호의 사용 료 면제 기간은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1의2. (생 략)	1. 1의2. (현행과 같음)	1. 1의2. (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을 직접 공 용·공공용 또는 비영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 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 ----- ----- -----지 방자치단체(시·도 교육 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현 행	허성무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u>사용료 면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행정재산의 공익적 활용 성과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50